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가합540640 판결 [구상금등청구의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변론 종결 2014. 12. 12.

판결 선고 2015. 2. 6.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738,785원 및 그 중 181,738,774원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2014. 7. 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전북 고창군 E 답 1,142m²에 관하여,

가. 피고 D과 피고 B 사이에 2014. 3.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D은 피고 B에게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4. 3. 26. 접수 제42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2. 4. 2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1억 8,000만 원, 대출기관 국민은행으로 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B, C은 당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서에 기해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런데 피고 A에 대하여 2014. 4. 4.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5. 30.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81,772,617원(원금 179,998,434원 + 이자 1,774,183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피고 A로부터 33,843원을 회수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고, 위 회수금 33,843원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11원($= 33,843\text{원} \times 12/100 \times 1/365$, 원 미만 버림)이다.

나. 피고 B의 피고 D에 대한 증여행위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2014. 3. 21. 지인인 피고 D에게 주문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4. 3. 26.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7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C에 대한 구상금청구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 합계 181,738,785원(= 대위변제금 181,772,617원 - 회수액 33,843원 + 확정지연손해금 11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181,738,77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5.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인 2014. 7. 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70788 판결 등 참조).

2)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B와 피고 D 사이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될 당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이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 지위에 있어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뒤인 2014. 4. 4.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사고에 따른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원고가 2014. 5. 30. 그 보증책임을 이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실제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2) 아래 사실은 갑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 헨켈테크놀러지 유한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구리시, 고창군에 대한 각 과세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 및 구리시 F 아파트 제101동 제1801호(이하 'F 아파트'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 181,738,785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82,404,073원, 헨켈테크놀러지스 유한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 80,829,980원을 각 부담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약 6,966,200원, F 아파트의 시가는 약 3억 4,900만 원이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은 합계 355,966,200원(= 6,966,200원 + 3억 4,900만 원), 소극재산은 합계 444,972,838원(= 181,738,785원 + 182,404,073원 + 80,829,980원)으로서,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이러한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B는 당시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수익자인 피고 D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D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 D의 소유로서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해 놓았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하여 이를 반환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 D은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을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재판장판사송경근

판사이태경

판사박철홍